

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. 14. 이정임 의원외 4인
나. 회부일자 : 2010. 1. 18.
다. 상정일자 : 2010. 1. 21.(제16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정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(2007.8.3제정)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“효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(안 제2조)
- 시장의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책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효행교육 장려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
-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장려 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 내지 8조)
- 효행장려 지원사업 수행 법인, 단체에 대한 사업평가 규정을 둠 (안 제9조)
- 효행장려 사업 수행 센터, 법인, 단체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둠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- 본 조례안은 산업화,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팽배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부양등의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“효”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역단위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효행장려 및 지원시책사업의 평가, 지원등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이정임 의원)

“없 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효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